

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백선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17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4.

발 의 자 : 백선희 · 김재원 · 강경숙
황운하 · 김상욱 · 정춘생
박은정 · 이해민 · 김준형
서왕진 · 최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4월 12·29여객기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, 피해자 지원방안의 하나로 참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‘치유�휴직’ 사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음.

그런데 참사 피해자 중에는 민간 근로자 외에도 공무원,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역의 국민이 포함되어 있어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공무원도 치유�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치유툄직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1항 등).

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근로자의 치유�휴직)”을 “(치유�휴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사업주는”을 “사업주 및 임용권자는”으로, “근로자가”를 “근로자 및 공무원이”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중 “근로자의 치유�휴직”을 “치유�휴직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영업손실의 보전)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·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(이하 “영업중단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영업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영업중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영업중단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. 다만,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

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영업중단 및 영업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에 관한 신청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4조(근로자의 치유�휴직)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·29여객기 참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(이하 “치유�휴직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�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.	제14조(치유�휴직) ① 사업주 및 임용권자는-----근로자 및 공무원이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5조(근로자의 치유�휴직 지원) ① · ② (생략)	제15조(치유�휴직 지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15조의2(영업손실의 보전)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2·29여객기 참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(이하

“영업중단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
신청에 의하여 영업중단으로
인한 금전적 손실의 전부 또는
일부를 보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의
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
시행 후 3년 이내에 영업중단
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영업중단의 기간은 6개월
이내로 한다. 다만, 의사의 소
견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
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
다.

④ 영업중단 및 영업중단으로
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에 관
한 신청의 기준 및 절차 등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정한다.